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323호
- 나. 발 의 자 : 김춘곤 의원(찬성자 31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13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전국적으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가 미비하여 시설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하고자 함.
- 또한 체육활동 중에 체육시설 이용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 배치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

이용을 위해 실태조사,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,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2제1항)

- 시장, 수탁자 또는 사무를 위임받는 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사전 공지하도록 함(안 제4조의2제2항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시립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, 시민이 체육활동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전문인력 배치를 사전에 공지하는 등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나. 시립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 등(안 제4조의2제1항)

- 개정안은 시장이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▶안전관리 실태조사 ▶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 ▶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현재 시립체육시설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을 근거로 정밀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, 정기점검, 긴급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음.

< 체육시설 안전점검 주기 >

안전등급	정밀안전점검	정밀안전진단	정기점검	긴급점검
A 등급	4년 1회 이상	6년 1회 이상	반기 1회 이상	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<small>(손상점검, 특별점검)</small>
B·C 등급	3년 1회 이상	5년 1회 이상		
D·E 등급	2년 1회 이상	4년 1회 이상	1년 3회 이상 <small>(해빙가우기·동절기 전 1회)</small>	

- 이에 따라 법적인 안전점검 주기에서 벗어나 방치되어 있는 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관리 실태조사,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와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에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-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는 준비 중에 있으며, 안내표지판은 기 운영 중에 있으나 대상 범위가 넓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소관도 존재하므로 서울시 차원에서의 관내 시립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, 가이드라인 수립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.

다. 응급전문인력 배치(안 제4조의2제2항)

- 개정안은 시립체육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무를 위임받는 자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(의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)을 참여인원수에 따라 배치해 시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하도록 규정함.
- 2023년 한 해에만 시립체육시설 이용 중 3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(붙임1 참조)하는 등 지속적인 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사전예방과 응급조치

를 위해 타당한 조치로, 이를 통해 스포츠행사 시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 활동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한편, 문화체육관광부는 「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(2023.3.6.발행)」을 통해 스포츠행사 시 참여 인원 수에 따른 응급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 의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 배치를 유도하고 있음.

<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 >

※ 행사운영 시 응급전문인력 편성/배치 기준(매뉴얼 28p)

- ▶ 응급상황 시 의료행위 및 처치가 가능한 전문인(의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) 1명을 반드시 함께 편성
- ▶ 선수/관람객 참여인원 에 따른 응급전문인력 수
 - 1,000명 이상 참여 예상 : 최소 3명
 - 500명 이상 1,000명 미만 참여 예상 : 최소 2명
 - 500명 미만 참여 예상 : 최소 1명

〈2023년〉 ※ 사업소 : '23. 9.30. 기준

연번	시설명	장 소	일 시	사고내용	조치내역	비고
1	산악문화 체험센터	실내 볼더링장	23.04.02.	준비 운동중 근육과열	응급실 내원 및 보험처리	
2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3.25	파울볼 왼쪽어깨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3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3.25	오른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4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4.09	파울볼 머리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5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4.11	파울볼 왼쪽 무릎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6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4.15	파울볼 우측 머리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7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4.23	파울볼 우측 쇄골 타박상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8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4.30	파울볼 귀, 광대뼈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9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5.04	파울볼 우측 볼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10	잠실야구장	이동통로	23.05.07	관람객 대상 부딪침 왼쪽 손, 양쪽무릎찰과상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11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5.09	파울볼 허리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12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5.14	홈런볼 오른 다리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13	잠실야구장	그라운드	23.05.21	인터뷰 백월 강풍에 목, 어깨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14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5.26	파울볼 좌측엄지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15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5.30	캐치볼로 인한 팔, 전완근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16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5.31	파울볼 좌측 광대뼈 우측 엄지손가락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17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6.09	파울볼 코타박, 코피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18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6.09	홈런볼 후두부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19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6.13	파울볼 피하는 과정에 구조물에 좌측 갈비뼈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20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6.15	파울볼 안경 파편 좌측 뺨 찰과상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
연번	시설명	장 소	일 시	사고내용	조치내역	비고
21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6.21	파울볼 좌측 이마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22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7.09	파울볼 코 타박, 코피, 찰과상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23	잠실야구장	이동 통로	23.07.29	1루 램프트랜치 미끄러짐, 무릎, 팔목, 어깨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24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8.13	파울볼 왼쪽 손바닥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25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8.26	파울볼 경추 파울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26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8.26	홈런볼 오른골반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27	잠실야구장	이동통로	23.09.05	꼬리뼈 골절(계단에서 낙상)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28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9.07	연습타구 입안 열상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29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9.08	파울볼 우측 발목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30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9.10	파울볼 우측 광대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31	잠실야구장	관람석	23.09.12	우측 안면부 파울타구 타박	보험처리 및 응급처치	
32	목동빙상장	아이스 링크	23.01.23.	이용중 이용객과 부딪혀 발목 부상	병원 내원 안내 및 보험처리	
33	목동빙상장	아이스 링크	23.07.14.	스케이트 신고 이동 중 고무판에서 넘어짐	병원 내원 안내 및 보험처리	
34	목동빙상장	아이스 링크	23.08.13.	일행과 손잡고 스케이팅 중 일행이 먼저 넘어지고 팔려 넘어지며 턱을 빙면에 부딪힘	병원 내원 안내 및 보험처리	
35	서울월드컵 경기장	풋살구장	23.03.03	풋살경기 중 넘어짐	병원 내원 안내 및 보험처리	

**의안번호
1323**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 김춘곤 의원	제안일자 2023.10.13.	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
주요내용	<p><제안이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립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, ○ 체육활동 중에 체육시설 이용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 배치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<p><주요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실태조사,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, 안내포지판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2제1항) ○ 시장, 수탁자 또는 사무를 위임받는 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응급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사전 공지하도록 함(안 제4조의2제2항) 		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3.10.13. 김춘곤 의원 발의 - (찬성자) 강석주, 경기문, 광향기 의원 등 31명 		
부 서 검토의견	<p>원안가결() / 수정가결 (○) / 부결() / 보류()</p>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조례일부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		

	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.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 3.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.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/div> <p>○ 시립체육시설관리자가 대관한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(의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)을 참여 인원 수에 따라 배치하도록 사전에 공지해야 함을 규정하여, 안전한 시립체육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함</p> <p>※ 참여 인원 수에 따른 응급전문인력 배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「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(’23. 3. 6. 발행)」에 규정하고 있음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◆ 행사운영 시 응급전문인력 편성/배치 기준(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 28p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응급상황 시 의료행위 및 처치가 가능한 전문인(의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) 1명을 반드시 함께 편성 ▶ 선수/관람객 참여인원 에 따른 응급전문인력 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,000명 이상 참여 예상 : 최소 3명 · 500명 이상 1,000명 미만 참여 예상 : 최소 2명 · 500명 미만 참여 예상 : 최소 1명 </div>					
대응방안						
상 임 위 처리결과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(원안가결, 수정가결, 부결, 보류, 미상정으로 구분) - 수정가결시 수정내용, 부결·보류·미상정시 사유 기재					
향후계획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○					
담당부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체육정책과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팀장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남규하(☎2133-2677)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담당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김병모(☎2133-2678)</td> </tr> </table>	체육정책과	팀장	남규하(☎2133-2677)	담당	김병모(☎2133-2678)
체육정책과	팀장	남규하(☎2133-2677)	담당	김병모(☎2133-2678)		